

2019년도 제1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8. 22.(목요일), 10:0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2명 참석
 - 심의위원 : 강호갑 위원(분과위원장 대행), 정태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36건(안건번호 제2019-98264호~99361호)
 - 회의결과 : 안건번호 제2019-98664호~98667호, 98697호, 98698호, 98710호, 98716호, 98770호, 98771호, 98856호, 98857호, 98869호, 98870호, 98873호, 98889호, 98890호, 98949호, 98964호~98970호는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전송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 일부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크래킹(cracking) 프로그램 또는 라이선스 키 없이 복제된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는 추후 라이선스 인증을 거치게 되므로 해당 프로그램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되, 그 중 안건번호 제2019-98869호, 98870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그 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의 경우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62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45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가수 '태연'의 노래제목은 비실명처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함
- B 위원 : 저작물명이기 때문에 비실명처리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물을 온라인상에서 찾기 어려운 저작물이라면 회의록을 본 이용자들이 저작물명을 검색하여 불법복제물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음원이기에 비실명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 모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전은 안전번호 제2019-98264호~9936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736건임
안전번호 제2019-9826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영유아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sing along) 콘텐츠의 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동영상을 재생하면 노래와 함께 애니메이션이 함께 나옴
(권리자의 유튜브 채널을 보여주며)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음원은 '멜론' 사이트에서 판매 중임
 - B 위원 : 시중에 판매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도 업로드하는 것은 광고수익이 있어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A 위원 : 권리자가 유튜브에 한 곡 전체를 올리는 것인지 일부만 올리는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였음
 - B 위원 : 1곡 전체를 올린 것으로 보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826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과 동일한 형식으로 다수의 음원 복제물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불법복제물이 상당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해당 블로그를 관찰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심의 요청되고 있음
(해당 블로그의 팝송 게시판을 제시하면서)다만 팝송의 경우 유튜브에 게시된 음악을 링크하여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 음악이 링크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유튜브 재생되는 화면의 프레임을 작게 만들어서 블로그에서 직접 재생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국내 최신가요는 링크가 아니라 직접 게시한 것임
- A 위원 :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98265호~9827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99361호는 사전에 보내드린 안건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임
해당 안건은 권리자가 직접 보호원에 신고한 것으로 데드카피(dead copy)임
심의위원회는 보호원이 심의요청한 날부터 7일 이내 심의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72조의6에서 정하고 있음
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3항에서는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전자문서로 배부하여야 함
심의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저작권보호심의팀은 8월 19일 심의위원들에게 검토보고서 등을 송부하였는데, 다음 날인 8월 20일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요청받았음
권리자가 보호원에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되기까지 일주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보호원의 심의 요청 7일 이내에 심의하면 되지만, 본 건의 경우 처리가 더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안건을 변경하여 이틀 만에 심의하게 되었음
- A 위원 : 안건이 추가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기존 안건에서 데드카피 1건과 권리자 신고 건을 교체함
(심의대상 게시물,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9361호는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이며, 민원인이 신고하면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음

- B 위원 :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993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8275호~99360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컴퓨터프로그램, 게임, 만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영화 '나랏말싸미'의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2019-98830호는 우리나라 영화 '나랏말싸미'를 판매하고 있음
- B 위원 : 최근 개봉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 개봉 일자를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2019. 7. 24.경 개봉하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887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윈도우 10'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크래킹된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크래킹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요청하였음

- B 위원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정보와 같이 게시되었다고 하면 시정권고할 수 있지만, 설치파일만 게시된 것이라면 시정권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게시물 본문에 '아무것도 없는 순수 윈도우10입니다. 크랙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 B 위원 :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설치 프로그램인 것으로 보임
설치하면 주기적으로 인증 받으라는 메시지가 확인될 것이며, 해당 설치 프로그램은 네이버 자료실 등에서도 제공하고 있음
단순 설치프로그램이면 가결하는 것이 문제될 것 같고, 라이선스 키, 크래킹 툴을 함께 제공하면 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자료를 보충하여 재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포함된 '윈도우10' 설치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하신 것인지 질의함
- B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윈도우10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후 해

당 프로그램이 설치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인지 질의함

- B 위원 : 시정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키 등 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크래킹하여 별도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정품 인증되어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함

하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식버전을 구입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트라이얼 버전의 설치파일이기 때문에 시정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A 위원 : 소프트웨어 중 '오토데스크 인벤터'는 윈도우10과 다른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안건 중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크래킹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여부를 보고 심의해야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오토데스크 인벤터' 채증자료 중 설치화면에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되면 윈도우10과 동일한 것으로 보임
컴퓨터 프로그램에 크래킹되었으면 동의여부를 묻는 화면이 나타나지 않음

컴퓨터 프로그램을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 게시물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키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심의 요청해달라고 보호원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B 위원 : 소프트웨어라서 데드카피로 보고 모니터링하여 채증한 것이라고 생각됨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른 상품도 볼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 윈도우를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다른 곳에서 배포하는 것을 차단했는데 효과가 미미하여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유틸리티 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소프트웨어 파일을 권한 없는 자가 복제하여 웹하드에 올렸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는 분명함
- B 위원 : 크래킹이 되지 않은 프로그램 파일이 웹하드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A 위원 : 프로그램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웹하드에서 포인트를 결제해서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면 웹하드에서 포인트 결제하고 다운로드 받지 않을 것임
- A 위원 :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을 게시자는 웹하드에 올

려 포인트 결제 후 다운로드 받게 하고 있음

- B 위원 :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웹하드 포인트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파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패킷에 대한 포인트를 지불한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웹하드 게시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으면 포인트를 얻게 됨
- B 위원 : 단순한 설치파일을 가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설치파일을 블로그 또는 카페에 올렸는데 시정권고한다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웹하드에 올려 영리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함
- B 위원 : 웹하드에 심의대상 게시물 이외에도 많이 게시되어 있음
- A 위원 :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판매권이 없는 웹하드 판매자가 올림
- B 위원 : 웹하드에서 다운로드 포인트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려면 검색하고 찾아야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는 것임
소프트웨어 구매에 대한 이용허락은 아님

- A 위원 : 편하게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것이라면 무료로 제공해야하지만 포인트를 획득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B 위원 : 별개라고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프로그램 저작물 자체를 복사해서 전송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유롭게 복제해서 전송해도 된다고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소프트웨어 업체별로 입장이 모두 다를 것임
기존에는 다운로드받아서 제한 없이 이용하면 문제되었지만 현재는 정품인증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음
정품인증 전까지 구매하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설치파일을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도 문제제기하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은 행정기관이고 저작권 보호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시정권고를 할 때 권리자의 정책이나 입장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저작물인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는 것은 맞음
- B 위원 : 전문위원의 의견은 굉장히 원칙적인 것임
그렇다면 블로그에 있는 사진저작물에 대해서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관점에서 봐야함

- 성원영 전문위원 :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상업적 저작물이기 때문에 다름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크래킹 프로그램이나 라이선스 키를 포함한다면 가결로 의결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결로 의결하기 어려울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윈도우10' 업데이트용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초 설치용 프로그램 자체를 제공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 '윈도우7' 등 '윈도우10' 이하 버전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시적으로 '윈도우10'으로 무료로 업데이트하게 해줬음
구 버전이 아닌 새 컴퓨터는 '윈도우10'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윈도우10' 업데이트 파일 이외 윈도우 설치파일을 확인하기 어려움
- B 위원 : '윈도우10 5월 업데이트'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으면 패치가 업데이트되는데 패치를 업데이트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임
윈도우에서는 자동 업데이트를 제공하는데 수동 업데이트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위원님 말씀은 웹하드에 게시된 윈도우10 파일을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업데이트 파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B 위원 : 업데이트 내용 하단에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하지만 “라이선스를 먼저 확보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음
- B 위원 :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려는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네이버, 다음 자료실 등에서 제공함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원칙적으로 설치파일을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하면 네이버, 다음 자료실도 위반하는 것임
 정품 인증 전에 사용할 수 있게 구성된 설치파일을 다른 곳에 게시한 것을 가결한다면 과도한 심의 행위인 것 같음
 그 부분에 대해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블로그 및 카페 게시자는 게시물을 올려도 얻는 수익이 없는데 웹하드는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으면 게시자가 포인트 수익을 얻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이라고 판단하여 웹하드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 설치파일에 대해 가결한다는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모니터링하여 채증할 때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용량 문제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라이선스 화면만 채증한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게시물에 프로그램은 크래킹되었다거나 구매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키를 포함하고 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보여주며)게시물 내용에 '인증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수 윈도우10입니다'고 되어 있음
- B 위원 : 인증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정현순 전문위원 :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데 포인트를 지불하고 '윈도우10'을 다운로드받는 지 의문임
- B 위원 : 웹하드에는 각종 소프트웨어가 게시되어 있어 웹하드 이용자들은 편하게 다운받기 위해 포인트를 지불하더라도 이용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보호원의 소프트웨어 복제물 모니터링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웹하드에 게시된 설치 프로그램에 대해 가결할 것인지 전체 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하면 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소프트웨어 안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위원회 개최 전까지 크래킹된 것과 안 된 것을 구분하여 재상정하는 것을 제안함
- B 위원 : 긴급 안전으로 전체위원회에 상정하면 될 것 같음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안전은 현재 채증 자료만으로는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방향이 정해지면 차기 분과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부결하고 2개 소프트웨어
게시물에 대해서만 전체위원회 상정하여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는 의미인지 질의함
- B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전체위원회에 상정함에 따라 기간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조사하여 심의 요청한 사안으로 민원
처리 기간은 없음
- A 위원 : 소프트웨어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 보류하는 건데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차기 분과위
원회에 안전으로 상정하여 심의하면 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연되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권리자 의사를 확인받지 않고 심의하는데 권리자
의사를 어디까지 고려해서 심의할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 같음
- B 위원 : 기존에는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기 위해 구매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연간 라이선스를 계약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

포토샵, 캐드, MS 오피스, 한글도 연간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함

- 성원영 전문위원 : 2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부결하는 의견을 제시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소프트웨어 중에 폰트도 포함되어 있는데 폰트 프로그램 파일은 제외하는 의견을 제시함
- B 위원 : 폰트는 부결에서 제외해도 될 것으로 생각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부결하는 안건의 번호를 특정해야 함
안건번호 안건번호 제2019-98664호~98667호, 98697호, 98698호 98710호, 98716호, 98770호, 98771호, 98856호, 98857호, 98869호, 98870호, 98873호, 98889호, 98890호, 98949호, 98964호~98970호임
- B 위원 : 한글도 설치하면 정품인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함
정품인증이 안되면 패치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프로그램 판매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이용 허락했다고 보는지 질의함
- B 위원 : 소프트웨어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설치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위원님 말씀은 크래킹하여 크랙된 프로그램을 올

리면 당연히 심의하여 시정권고 해야 하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동일하게 그대로 복제하여 게시한 것으로 설치 시 라이선스 계약이 중간에 뜨기 때문에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정리하면 되는지 확인함

- B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웹하드에 올렸을 때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 및 시정권고가 개별 권리자들의 이익 추구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질서 및 문화를 개선이 목적임

- B 위원 : 그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미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리자 의사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함
합법콘텐츠를 합법적인 경로로 유도하는 측면도 있음

- B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게임 프로그램 관련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98939호
2019년 발표된 게임 프로그램이며, 복제물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99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 해당 네이버 밴드를 제시하면서)안건번
호 제2019-99227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기생충' 불법복제물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밴드 이름은 '영화보는 날이 좋
다'임

(영화 '알라딘' 관련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밴드는 자동차 '제네
시스' 동호회 밴드인데, 영화 '알라딘' 복제물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에도 화면에서 해외 사행성 사이트 주소인 '▲▲▲▲
▲.COM'이 확인됨

- A 위원 :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데드카피이므로 시정을 권
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98664호~98667
호, 98697호, 98698호 98710호, 98716호, 98770호, 98771호, 98856호,
98857호, 98869호, 98870호, 98873호, 98889호, 98890호, 98949호,
98964호~98970호는 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
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건번호 제2019-98869호, 98870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19-98664호~98667호, 98697호, 98698호 98710호, 98716호, 98770호, 98771호, 98856호, 98857호, 98869호, 98870호, 98873호, 98889호, 98890호, 98949호, 98964호~98970호는 부결하되, 그 중 안전번호 제 2019-98869호, 98870호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밖에 안전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강호갑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6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8. 29.

분과위원장 대행 강호갑

위원 정태호